



싱가폴 국제중재센터 중재규칙
SIAC 규칙

목차

*영어원본과 한국어번역본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영어원본에 따릅니다.

규칙 1	적용 및 해석범위	1
규칙 2	통지 송달 및 기간의 산정	3
규칙 3	중재 신청	4
규칙 4	중재 신청서에 대한 답변	5
규칙 5	신속절차	6
규칙 6	중재인의 수와 선정	7
규칙 7	단독중재인	7
규칙 8	3인 중재인	8
규칙 9	다수당사자에 의한 중재인 선정	8
규칙 10	중재인 자격	9
규칙 11	중재인의 기피	10
규칙 12	기피 통지	10
규칙 13	기피에 대한 결정	11
규칙 14	중재인의 교체	11
규칙 15	중재인 교체시 심리 절차의 반복	12
규칙 16	중재 절차	12
규칙 17	당사자의 서면 제출	13
규칙 18	중재지	14
규칙 19	중재언어	14
규칙 20	당사자의 대리인	14
규칙 21	심리	15
규칙 22	증인	15
규칙 23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전문가	16
규칙 24	중재판정부의 기타 권한	16

목차

규칙 25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18
규칙 26	임시적 처분 및 긴급처분	19
규칙 27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 우호적 중재 (amiable compositeur)	19
규칙 28	중재판정	20
규칙 29	중재판정의 정정과 추가판정	21
규칙 30	중재비용의 예납	22
규칙 31	중재비용	23
규칙 32	중재판정부의 수당 및 경비	24
규칙 33	당사자의 법률비용 및 기타 비용	24
규칙 34	면책	24
규칙 35	비밀유지	25
규칙 36	중재법원장, 중재법원 및 사무국의 결정	26
규칙 37	일반 조항	26
별지 1	긴급중재인	27
별지 2	싱가폴 국제중재센터의 국내 중재규칙 특례 조항	29
	결제정보 및 싱가포르 국제중재법(CAP 143A)	31
	SIAC 표준조항 및 준거법	32
	신속절차 표준조항	34
	SIAC 모바일 앱	36
	비용에 관한 별지규정	37

싱가폴 국제중재센터 중재규칙 SIAC 규칙(제5차, 2013. 4.1.)

1. 적용 및 해석범위

1.1 당사자들이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의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중재가 진행, 관리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규칙이 당해 중재에 적용되는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강행법규가 우선한다.

1.2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들의 별도합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 개시되는 모든 중재에 적용된다.

1.3 2013년 4월 1일부터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의 제4차 중재규칙(2010년 7월 1일 발효)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a. 제1.3조에서:

“이사회(Board)”, “이사장(Chairman)”, 및 “이사회 내 위원회(Committee of the Board)”의 정의는 삭제되고,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이사회”는 중재법원(Court)을 말한다.

“이사장”은 중재법원장(President)을 말한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중재법원(Court)을 말한다.

b. 다음의 정의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정의 뒤에 삽입된다.

“중재법원 내 위원회(Committee of the Court)”은 중재법원장이 선정한 2인 또는 그 이상의 중재법원 내 위원(중재법원장 포함 가능)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중재법원”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의 중재법원을 말하며, 중재법원 내 위원회를 포함한다.

“중재법원장”은 중재법원의 원장을 말하며, 부원장 (Vice President) 및 사무총장(Registrar)을 포함한다.

1.4 2013년 4월 1일부터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의 제3차 중재규칙 (2007년 7월 1일부터 발효)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a. 제1.2조에서:

“이사장”의 정의내용은 삭제되고,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이사장”은 중재법원장을 말한다.

b. 다음의 정의는 “이사장”의 정의 뒤에 삽입된다.

“중재법원 내 위원회”는 중재법원장이 선정한 2인 또는 그 이상의 중재법원 내 위원(중재법원장 포함 가능)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중재법원”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의 중재법원을 말하며, 중재법원 내 위원회를 포함한다.

“중재법원장”은 중재법원의 원장을 말하며, 부원장 (Vice President) 및 사무총장(Registrar)을 포함한다.

1.5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중재판정(Award)”은 일부 판정 또는 최종판정과 긴급중재인의 판정을 포함한다.

“중재법원 내 위원회”는 중재법원장이 선정한 2인 또는 그 이상의 중재법원 내 위원(중재법원장 포함 가능)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중재법원”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의 중재법원을 말하며, 중재법원 내 위원회를 포함한다.

“중재법원장”은 중재법원의 원장을 말하며, 부원장(Vice President) 및 사무총장(Registrar)을 포함한다.

“사무총장”은 중재법원의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은 사무국으로 표기한다)을 말하며 부사무총장(Deputy Registrar)을 포함한다.

“SIAC”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를 말한다.

“중재판정부(Tribunal)”는 중재인이 1인인 경우 당해 중재인 또는 중재인이 2인 이상 선정된 경우 당해 중재판정부의 모든 중재인들을 말한다.

모든 대명사는 성증립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모든 단수 명사는 문맥상 적절한 경우 당해 명사의 복수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통지 송달 및 기간의 산정

- 2.1 이 규칙과 관련된 모든 통지, 교신 및 제안은 서면으로 한다. 모든 서면 교신은 등기우편, 택배, 모든 종류의 전자 교신(이메일 및 팩스 포함) 또는 송신기록이 남는 다른 통신수단으로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i) 수신인 자신이 직접 수령한 경우 (ii) 수신인의 거주지, 직장 혹은 수신인이 지정한 주소, (iii) 당사자간에 합의된 주소, (iv) 당사자간의 이전 거래에 사용된 주소 또는 (v) 합리적인 조회 이후에도 위에 열거된 수령지를 확인 할 수 없어 수신인의 가장 최근에 알려진 거주지 또는 직장으로 송달된 경우.
- 2.2 통지, 교신 및 제안은 송달된 날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 2.3 이 규칙에 의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간은 통지, 교신 및 제안을 수령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기간의 말일이 제 2.1조에서 정한 수령지에서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기간은 그 이후의 최초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기간의 중간에 영업일이 아닌 날이 있는 경우 기간의 산정에 포함된다.
- 2.4 당사자는 사무국에 중재 절차와 관련된 모든 통지, 교신 및 제안을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 2.5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무국은 언제든지 이 규칙이 정한 기한을 연장 혹은 단축할 수 있다.

3. 중재 신청

- 3.1 중재절차를 개시하고자 하는 자(“신청인”, the “Claimant”)는 사무규에 다음 사항들이 기재된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a. 분쟁을 중재에 회부한다는 요청
 - b. 중재 당사자 및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와 이메일 주소
 - c. 중재조항 또는 별도의 중재합의의 원용 및 그 사본
 - d. 분쟁과 관련된 계약서(또는 다른 문서, 예를 들어 투자 조약서)의 원용 및 가능한 경우 그 사본
 - e. 가능한 한도까지 표시한 청구 금액을 포함한 청구 취지 및 분쟁의 성격과 상황에 관한 간략한 기술
 - f. 중재절차에 관하여 당사자가 이미 합의한 사항 또는 신청인이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기술
 - g. 중재합의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이 제안하는 중재인 수
 - h. 중재합의에서 3인의 중재인을 정하고 있는 경우, 신청인이 선정한 1인의 중재인, 혹은 중재합의에서 1인의 중재인을 정하고 있는 경우 신청인이 제안한 1인의 중재인. 단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 i. 적용될 법률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
 - j.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
 - k. 해당 신청요금 납입
- 3.2 중재신청서에는 제17.2조의 청구이유서(Statement of Claim)도 포함시킬 수 있다.

- 3.3 중재절차의 개시일은 사무국이 완성된 중재신청서를 수령하였을 때로 간주한다. 완성된 중재신청서란 제3.1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거나 사무국이 그 요건이 상당히 충족되었다고 결정한 중재신청서이다. SIAC는 중재절차의 개시에 관하여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4 신청인은 동시에 중재신청서 사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송부한 사실에 관하여 송부방법, 일자 등을 특정하여 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중재 신청서에 대한 답변

- 4.1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답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답변서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인정여부
 - b. 반대신청이 있는 경우, 가능한 한도까지 표시한 반대신청 금액을 포함한 반대신청취지 및 분쟁의 성격과 상황에 관한 간략한 기술
 - c. 중재신청서에 포함된 제3.1조 (f), (g), (h), (i) 및 (j)항에 관한 기술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 또는 그 규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신청인의 의견
 - d. 중재합의에서 3인의 중재인을 정하고 있는 경우, 피신청인이 선정한 1인의 중재인, 혹은 중재합의에서 1인의 중재인을 정하고 있는 경우, 신청인이 선정한 1인 중재인에 관한 동의 또는 다른 제안. 단, 당사자간 별도의합의가 있는 경우 제외.
- 4.2 답변서에는 제17.3조의 답변이유서(Statement of Defence) 및 제17.4조의 반대신청서(Statement of Counterclaim)를 포함시킬 수 있다.
- 4.3 피신청인은 동시에 답변서의 사본을 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하고, 반대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신청비용을 함께 송부하여야 하며, 그 송부방법 및 일자를 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5. 신속절차

- 5.1 중재판정부가 완전히 구성되기 전,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당사자는 중재절차가 이 규칙이 정하고 있는 신속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a. 신청, 반대신청 및 상계항변이 있는 경우, 이를 합한 총 분쟁가액이 5,000,000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b.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 c. 극히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건인 경우
- 5.2 당사자가 사무국에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신속절차를 신청하고, 중재법원장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중재가 신속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가 적용된다.
- a. 사무국은 이 규칙에 따른 어떠한 기한도 단축시킬 수 있다.
 - b. 중재법원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사건은 단독중재인에게 회부된다.
 - c. 당사자들이 중재가 오로지 서면증거에 의할 것을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모든 증인과 전문가 증인의 심문 및 주장의 진술과 관련하여 심리를 열어야 한다.
 - d. 사무국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기한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 e. 당사자들이 중재판정의 이유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그와 같은 중재판정을 내린 이유를 요약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6. 중재인의 수와 선정

- 6.1 당사자들의 별도 합의가 있거나, 당사자의 제안이 있는 경우 사무국은 그 제안, 분쟁의 복잡성, 관련 액수 또는 기타 분쟁에 관련된 상황을 고려하여 사건이 3인의 중재인에게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중재인을 선정한다.
- 6.2 당사자 1인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에 의하여 중재인을 선정하기로 합의하거나, 이미 임명된 중재인을 포함한 제3자에 의하여 중재인을 선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러한 합의는 이 규칙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본다.
- 6.3 당사자가 지명한 중재인이든 이미 임명된 중재인을 포함한 제3자가 지명한 중재인이든, 중재법원장이 재량에 따라 그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 6.4 중재법원장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따라 중재법원장이 중재인을 지명하는 경우 그 결정은 최종적이며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6.5 중재법원장은 어느 당사자가 제안하여 지명된 모든 중재인 후보자에 대해 선정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 6.6 사무국은 각 중재인의 선정 조건을 이 규칙 및 시행 중인 시행세칙 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확정한다.

7. 단독중재인

- 7.1 단독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할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단독중재인으로 선정될 자로서 1인 이상의 중재인 후보자를 제안할 수 있다. 당사자 쌍방이 단독중재인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제6.3조가 적용된다.
- 7.2 사무국이 중재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21일 내에 당사자들이 단독중재인의 선정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법원장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단독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8. 3인 중재인

- 8.1 3인 중재인이 선정되어야 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 8.2 당사자가 상대방의 중재인 지명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혹은 당사자들 사이에 달리 합의된 방법으로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법원장이 대신하여 중재인을 선정한다.
- 8.3 당사자들 사이에 세 번째 중재인을 선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가 없거나,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혹은 사무국이 의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세 번째 중재인이 선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의장중재인으로 활동할 세 번째 중재인은 중재법원장이 선정한다.

9. 다수당사자에 의한 중재인 선정

- 9.1 중재 관련 당사자가 3인 이상이고 3인 중재인이 선정되어야 하는 경우, 다수의 신청인들과 다수의 피신청인들은 각각 공동으로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한다. 이러한 공동 지명이 사무국이 중재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28일 이내, 당사자가 합의한 기한 또는 사무국이 정한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법원장이 중재인 3인을 모두 선정하며 이 중 1인을 의장중재인으로 지정한다.
- 9.2 중재 관련 당사자가 3인 이상이며 단독중재인이 선정되어야 하는 경우, 모든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중재인을 선정한다. 이러한 공동 지명이 사무국이 중재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28일 이내, 당사자가 합의한 기한 또는 사무국이 정한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법원장이 중재인을 선정한다.

10. 중재인 자격

- 10.1 당사자로부터 지명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규칙에 의하여 중재를 하는 모든 중재인들은 언제나 독립적이고 공정하여야 하며, 그 일방 당사자의 변호인으로 활동하여서는 아니된다.
- 10.2 이 규칙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는 경우, 중재법원장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인 자격 요건과, 독립적이고 공정한 중재인 선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10.3 중재법원장은 중재인이 사건의 내용에 적절하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는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 10.4 중재인은 당사자들과 사무국에 자신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하여 정당할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가능한 신속히 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고지는 중재법원장으로부터 중재인으로 선정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10.5 중재절차 진행 중에 위와 유사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 중재인은 당사자들, 다른 중재인들과 사무국에 이를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 10.6 당사자들이 중재인 자격요건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중재인의 지명 통지를 수령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가 중재인의 자격미달을 선언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 중재인은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당사자가 중재인의 자격미달을 선언하는 경우, 제11조부터 제14조의 중재인에 대한 이의 및 교체절차 규정이 적용된다.
- 10.7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중재인 혹은 당사자가 지명하는 중재인 후보자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절차 외적으로 일방적 소통(ex parte communication)을 할 수 없다. 다만, 중재인 후보자에게 분쟁의 대략적인 성격 및 예상절차에 관하여 안내하거나, 중재인 후보자의 자격, 선정가능성 또는 독립성을 논의하거나, 당사자 혹은 당사자가 지명한 중재인이 세 번째 중재인을 선정하는 경우 중재인 후보자들의 적합성에 관하여 논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의장중재인 후보자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절차 외적으로 일방적 소통(ex parte communication)을 할 수 없다.

11. 중재인의 기피

- 11.1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만한 사유가 있거나 중재인이 당사자가 합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재인을 기피할 수 있다.
- 11.2 당사자는 자신이 지명한 중재인에 대하여는 선정 이후에 알게 된 이유를 근거로 하여서만 기피할 수 있다.

12. 기피 통지

- 12.1 제10.6조에 의하여 중재인을 기피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그 중재인의 선정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제 11.1조, 제11.2조에 언급된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 12.2 기피신청은 사무국에 접수함과 동시에 다른 모든 당사자들, 기피의 대상이 된 당해 중재인 및 중재판정부의 다른 모든 중재인들에게도 송부되어야 한다. 기피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기피원인이 된 사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기피신청이 해결될 때까지 사무국은 중재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다.
- 12.3 일방 당사자가 중재인에 대하여 기피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에 동의할 수 있다. 기피대상 중재인은 스스로 사임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경우가 기피사유 자체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 12.4 제12.3조에 언급된 상황인 경우, 중재인 교체는 제6조, 제7조, 제8조 또는 제9조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기피대상 중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지명권을 행사할 권리를 잃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동 조항들에 따른 기한은 다른 당사자의 동의 또는 기피대상 중재인의 사임의사를 접수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13. 기피에 대한 결정

- 13.1 기피신청을 수령한 지 7일 이내에 상대방이 기피에 동의를 하지 않거나, 기피대상이 된 당해 중재인이 자발적으로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법원이 기피에 대한 결정을 한다.
- 13.2 중재법원이 기피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보궐중재인의 선정은 제6조, 제7조, 제8조 또는 제9조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기피대상 중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지명권을 행사할 권리를 잃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동 조항들에 따른 기한은 사무국이 중재법원의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 13.3 중재법원이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해당 중재인은 중재를 계속 진행한다. 사무국이 제12.2조에 의하여 중재 절차를 중단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법원이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기피대상 중재인은 중재 절차를 진행할 권한이 있다.
- 13.4 중재법원은 기피와 관련한 비용을 정할 수 있으며, 누가 어떻게 당해 비용을 부담할 지를 지시할 수 있다.
- 13.5 본 조항에 따른 중재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항소할 수 없다.

14. 중재인의 교체

- 14.1 중재절차 진행 중에 중재인이 사망,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 보궐중재인의 지명 및 선정에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보궐중재인이 선정되어야 한다.
- 14.2 중재인이 임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규칙에 따라 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인에 대한 기피 및 교체 절차에는 제11조 내지 제13조 및 제14.1조가 적용된다.
- 14.3 중재인이 임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규칙에 따라 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중재법원장은 당사자들과 상의 후 재량으로 이러한 중재인을 해임할 수 있다.

15. 중재인 교체시 심리 절차의 반복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중재인이나 의장 중재인이 교체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전의 모든 심리절차를 반복한다. 다른 중재인이 교체된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과 상의한 후 재량으로 심리절차의 반복 여부를 결정한다. 중재판정부가 이미 임시판정 혹은 부분판정을 내린 경우, 이와 같은 판정에만 관련된 심리절차는 반복될 수 없으며 이미 내린 판정은 유효하다.

16. 중재 절차

- 16.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와의 상의를 거친 후,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이고 중국적으로 사건을 판정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중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16.2 중재판정부는 모든 증거의 관련성, 중대성 및 증거능력을 결정한다. 증거는 법적으로 증거능력이 있을 필요는 없다.
- 16.3 모든 중재인 선정이 끝난 후 중재판정부는 가능한 신속하게 당사자와 대면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식으로 사건에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예비절차를 개최하여야 한다.
- 16.4 중재판정부는 재량으로 절차 진행의 순서 및 절차의 분리를 지시하고, 반복되거나 사안과 무관한 진술 등의 증거의 배제를 통하여 당사자들로 하여금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발표를 집중하게끔 지시할 수 있다.
- 16.5 의장중재인은 절차관련 결정을 단독으로 내릴 수 있으며, 이는 중재판정부가 수정할 수 있다.
- 16.6 일방 당사자가 중재판정부 혹은 사무국에 제출하는 모든 진술, 서류 혹은 다른 정보는 동시에 다른 당사자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

17. 당사자의 서면 제출

- 17.1 중재판정부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서면 제출은 본조에서 규정하는 대로 진행된다.
- 17.2 제3.2조에 따라 이미 서면이 제출된 경우가 아닌 한, 신청인은 중재판정부가 정한 기한 내에 다음의 내용이 자세히 기재된 청구이유서(“Statement of Claim”)를 피신청인과 중재판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a. 신청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한 진술
 - b. 신청을 뒷받침하는 법률적 근거 혹은 주장, 그리고
 - c. 청구취지와 산정이 가능한 모든 청구금액
- 17.3 제4.2조에 따라 이미 서면이 제출된 경우가 아닌 한, 피신청인은 중재판정부가 정한 기한 내에 중재신청서에 대한 완전한 답변이 기재되고 근거가 된 사실관계와 주장 등이 포함된 답변이유서(“Statement of Defence”)를 신청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반대신청이 있는 경우 답변이유서는 이를 포함하여야 하고, 반대신청은 제17.2조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 17.4 반대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중재판정부가 정한 기한 내에 반대신청서(“Statement of Counterclaim”)에서 신청인이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사실관계 및 법률적 주장과 신청인이 이를 부인하는 근거, 신청인이 근거하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주장 등이 자세히 기재된 반대신청에 대한 답변서(“Statement of Defence to the Counterclaim”)를 피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17.5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절차의 지연, 상대방 당사자의 권리 침해 또는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하여 수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반대신청 또는 다른 제출서면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이나 반대신청의 보완이나 변경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수정할 수 없다.
- 17.6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추가서면을 제출하도록 재량에 따라 허가하거나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해당서면의 제출을 위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17.7 본조에 언급된 모든 서면 제출은 이전에 어느 당사자에 의해서도 제출되지 않은 일체의 근거 서류 사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 17.8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 종료 결정 또는 다른 적절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
- 17.9 피신청인이 답변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당사자든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방법대로 변론할 기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시킬 수 있다.

18. 중재지

- 18.1 당사자들은 중재지를 합의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지는 싱가포르 한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당해 사안의 모든 상정을 고려하여 다른 중재지가 더 적합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8.2 중재판정부는 자신이 판단하기에 신속하고 적절한 모든 방법으로, 또한 스스로 판단하기에 편리하고 적절한 모든 장소에서 심리 및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9. 중재언어

- 19.1 당사자들의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를 결정한다.
- 19.2 서면이 중재언어(들)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중재판정부는, 혹은 중재판정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무국이 당사자에게 중재판정부 혹은 사무국이 정한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0. 당사자의 대리인

모든 당사자는 법률가 혹은 다른 대리인의 대리를 받을 수 있다.

21. 심리

- 21.1 당사자들이 서면으로만 중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의 요청 또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중재판정부는 관할권 관련 문제를 포함하여 분쟁의 본안에 관한 서면 증거 제출 그리고/또는 구두변론을 위해 심리절차를 개최해야 한다.
- 21.2 중재판정부는 회의나 심리 관련 날짜, 시간, 장소를 정하고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통지를 하여야 한다.
- 21.3 당사자가 충분한 이유 없이 심리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으며 현재까지 제출된 서면과 증거에 근거하여 중재판정을 할 수 있다.
- 21.4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회의와 심리는 비공개로 하며, 회의나 심리 관련 녹음, 속기록, 서류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2. 증인

- 22.1 중재판정부는 모든 심리 이전에 당사자에게 전문가 증인을 포함한 증인의 신원, 증언할 주제 및 쟁점들과의 상관관계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할 수 있다.
- 22.2 중재판정부는 증인의 출석을 허용, 거부, 혹은 제한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 22.3 구두 증언을 하는 증인은 각 당사자, 대리인 및 중재판정부로부터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며, 질문 방법은 중재판정부가 결정한다.
- 22.4 중재판정부는 증인의 증언을 서명된 진술서, 선서 진술서, 또는 다른 종류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22.2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출석을 허용하는 경우, 당사자는 이러한 증인이 구두심리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증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증인의 서면진술을 재량에 따라 고려하거나, 무시하거나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

- 22.5 당사자나 그 대리인은 증인 또는 증인이 될 자(당해 당사자 측 증인의 경우에도)가 심리에 출석하기 전에 그와 면담을 가질 수 있다.

23.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전문가

- 23.1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a. 당사자들과 상의한 바에 따라 전문가를 선정하여 특정 쟁점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 b. 당해 전문가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서류, 물건 또는 기타 재산을 전문가가 조사할 수 있도록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23.2 중재판정부가 선정한 전문가는 중재판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를 수령하면, 중재판정부는 보고서의 사본을 각 당사자에게 제공하고 당사자들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 23.3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위 전문가는 자신의 보고서가 전달된 후 심리에 참가한다. 심리 중 당사자는 당해 전문가를 심문할 기회를 가진다.

24. 중재판정부의 기타 권한

이 규칙에 명시된 권한 이외에, 중재에 적용되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a. 계약의 정정을 지시할 수 있다. 단, 중재판정부가 판단하기에 당해 계약 당사자 전원에 의한 실수를 정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이는 계약서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이러한 계약 정정을 허용할 때만 가능하다.

- b.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제3자가 중재합의의 당사자이고 당해 제3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다면 제3자의 병합을 허용하여, 하나의 최종 판정, 혹은 각각의 당사자들에게 별도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c. 제28.2조와 제29.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이나 중재판정부가 정한 기한을 연장 혹은 단축할 수 있다.
- d. 중재판정부의 필요나 편의에 의하여 질의를 할 수 있다.
- e. 당사자에게 어떠한 물건이나 기타 재산을 조사 가능하게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f. 분쟁의 대상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떠한 물건이나 기타 재산을 보존, 보관, 매매, 또는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g. 중재판정부가 당사자가 소지하거나 지배하에 있는 서류가 사건과 관련이 있고 결론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와 상대 당사자가 검사할 수 있도록 그 서류의 사본을 제공하도록 당사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 h. 미지급 중재비용에 대한 지급 판정을 할 수 있다.
- i. 당사자에게 선서진술서나 다른 방식으로 증거를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 j. 당사자 자산의 소실로 인하여 중재판정이 실효성이 없는 판정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당사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 k. 당사자에게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법률비용 또는 다른 비용을 위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l. 당사자에게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액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m. 당사자가 이 규칙, 중재판정부의 명령이나 지시 및 부분 판정을 위반 또는 거부하거나, 회의나 심리에 불참하는 경우에도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당사자에게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징계를 가할 수 있다.

- n. 제17조에 의하여 제출된 서면들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다투어지지 않은 쟁점이라도, 그 쟁점이 일방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인지되어 있고 그 쟁점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주어졌다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쟁점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 o.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법률을 결정할 수 있다.
- p. 법률이나 다른 이유로 인한 면책특권 신청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25.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 25.1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존부, 유효성, 또는 중재 진행에 관한 SIAC의 관할권에 관하여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무국은 그러한 이의제기가 중재법원에 회부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결정한다. 사무국이 중재법원에 회부되어야 할 이의제기로 결정하는 경우 중재법원은 이 규칙에 따른 유효한 중재합의가 일응 인정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중재법원에 의하여 중재합의가 일응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 절차는 종료된다. 사무국이나 중재법원의 결정은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관할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5.2 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의 존부, 해지 및 유효성에 관한 이의를 포함하여, 자신의 관할권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중재합의는 계약의 나머지 부분과 독립된 계약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당해 계약이 무효라고 결정하였다고 하여 중재조항까지 법률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25.3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신청은 늦어도 답변이유서 또는 반대신청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될 때까지 제기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관할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의는 중재판정부의 관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되는 당해 쟁점에 대하여 중재판정부가 판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 신속하게 제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 두 경우에도 중재판정부가 본조에 따른 지연된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경우 지연된 이의신청

을 받아들일 수 있다. 당사자가 중재인을 지명하였다거나 중재인 지명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25.4 중재판정부는 제25.3조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선결문제로 판단 하거나 신청의 본안에 대한 중재판정에서 판단할 수 있다.
- 25.5 당사자는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상계를 위하여 청구 또는 답변을 원용할 수 있다.

26. 임시적 처분 및 긴급처분

- 26.1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가처분 기타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의 신청인에게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26.2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긴급한 임시적 처분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별지 1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 26.3 당사자가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 또는 그 이후에 예외적인 상황에서 법원에 임시적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 규칙과 상충되지 아니한다.

27.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 우호적 중재 (amiable compositeur)

- 27.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분쟁의 실체에 적용된다고 지정한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27.2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만 우호적 중재(amiable compositeur) 또는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에 따라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27.3 모든 경우, 중재판정부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고 해당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상거래 관습을 고려하여야 한다.

28. 중재판정

- 28.1 당사자들이 더 이상 관련된 중요한 증거 및 서면을 제출할 것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중재절차의 종료를 선언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을 내리기 전에는 언제든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재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 28.2 중재판정부는 모든 종류의 중재판정을 내리기 전에 판정문 초안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국이 기한을 연장하거나 당사자들 간에 달리 합의하는 경우가 아닌 한,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의 종료를 선언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사무국에 판정문 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가능한 신속하게 판정문 형식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거나 중재판정부의 판단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실체적 쟁점에 대하여도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그 형식에 관하여 사무국의 승인을 얻기 전까지는 판정을 내릴 수 없다.
- 28.3 중재판정부는 서로 다른 쟁점에 대하여 각기 다른 시기에 별도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 28.4 만약 특정 중재인이 합당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의 결론을 내리는 데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머지 중재인들은 당해 중재인을 제외하고 절차를 진행한다.
- 28.5 복수의 중재인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은 과반수결의에 따른다. 과반수결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장 중재인이 단독으로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을 내린다.
- 28.6 중재판정은 사무국에 송부되어야 하며, 사무국은 중재비용 전액이 납부된 경우 인증된 중재판정 사본을 각 당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28.7 중재판정부는 중재 대상인 금액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한 이율 또는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이율로, 단리 또는 복리의 이자 지급에 관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고, 이자 지급은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까지 이루어지도록 한다.

- 28.8 당사자들이 화해를 하였을 경우, 일방 당사자가 요구하면 중재판정부는 화해 내용을 기재한 화해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당사자들이 화해판정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이 화해하였음을 사무국에 확인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중재비용의 납입과 동시에 중재판정부의 임무는 종료되며 중재절차는 종료된다.
- 28.9 제29조 및 별지 1의 경우는 별도로 하고, 이 규칙에 따른 중재에 합의함으로써, 당사자들은 중재판정을 즉시 지체 없이 이행하는데 동의할 뿐만 아니라, 권리의 포기가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한, 어느 나라 법원 또는 사법당국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항소, 검토 기타 불복에 관한 권리도 모두 확정적으로 포기하며, 당사자들은 나아가 중재판정이 판정일로부터 최종적이며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 28.10 SIAC은 당사자들의 성명이나 기타 인적 정보를 편집한 판정문을 공표할 수 있다.

29. 중재판정의 정정과 추가판정

- 29.1 당사자는 중재판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국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중재판정부에게 중재판정문의 오기, 오산, 오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오류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른 당사자는 이러한 정정신청의 수령 후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정정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정을 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문의 정정은 중재판정문 원문에 직접 또는 별도의 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중재판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 29.2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9.1조에 언급된 오류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 29.3 당사자는 중재판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국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중재판정부에게 중재절차에서 제시하였으나 중재판정에서 판단되지 않은 청구에 대한 추가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른 당사자는 이러한 추가판정신청의 수령 후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추가판정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추가판정을 내려야 한다.
- 29.4 당사자는 중재판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국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중재판정부에 중재판정의 해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른 당사자는 이러한 중재판정 해석신청의 수령 후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 해석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석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중재판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 29.5 사무국은 본조에서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29.6 제28조에 규정된 사항들은 중재판정의 정정이나 추가판정을 통하여 변경된 사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0. 중재비용의 예납

- 30.1 중재판정부 수당 및 SIAC의 비용은 중재 개시일 당시에 효력이 있는 별표 중재비용에 따라 계산한다. 중재판정부 수당의 결정 방법은 중재판정부 구성 이전에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30.2 사무국은 중재비용의 예납금액을 결정한다. 사무국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예납금의 50%는 신청인이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피신청인이 지급한다. 사무국은 신청 및 반대신청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예납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 30.3 중재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때 신청 또는 반대신청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무국은 임시로 중재비용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액은 분쟁의 성질 및 사건의 배경을 근거로 산출된다. 이러한 추정액은 추후 나타나는 정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30.4 사무국은 때때로 당사자들로 인하여 또는 당사자들을 위하여 이미 발생하거나 추후 발생할 중재비용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추가예납을 지시할 수 있다.
- 30.5 일방 당사자가 예납을 하지 않은 경우, 사무국은 중재판정부 및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중재판정부에게 업무를 중지하고 당해 신청 또는 반대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하기까지의 기한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신청 또는 반대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에게 다른 절차로 동일한 신청 또는 반대신청을 다시 제기할 권리는 유지된다.
- 30.6 당사자들은 중재비용에 관하여 각자 및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신청 또는 반대신청과 관련한 중재비용의 선납 또는 예납금의 전액을 납입할 수 있다. 본조에 따라 요구되는 납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납되는 경우, 중재판정부 또는 사무국은 업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제24조 (h)호에 따른 미납금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30.7 중재가 심리절차 없이 화해 또는 종료되는 경우, 사무국이 최종적으로 중재비용을 결정한다. 사무국은 중재가 화해 또는 종료될 당시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결정된 중재비용이 예납금 보다 적은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한 비율대로 잔액이 반환되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예납금을 납입한 비율대로 반환된다.
- 30.8 모든 예납금은 SIAC에 지급되고 SIAC이 보관한다. 예납금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이자는 SIAC이 보유한다.

31. 중재비용

- 31.1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문에서 중재비용의 액수에 관하여 명시한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문에서 당사자들 간에 중재비용을 분담할 비율을 결정한다.

31.2 “중재비용(costs of the arbitration)” 이라 함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중재판정부의 수당 및 경비
- b. SIAC의 관리수수료 및 비용
- c. 중재판정부가 선정한 전문가 등 기타 중재판정부 지원에 따른 경비

32. 중재판정부의 수당 및 경비

32.1 중재판정부의 수당은 별표 중재비용 및 중재절차가 종료된 당시의 단계에 따라 사무국이 확정한다. 예외적인 경우, 사무국은 별표 중재비용에 기재된 내용에 더하여 추가 수당을 허용할 수 있다.

32.2 중재판정부의 필요에 따른 정당한 지출 및 다른 경비는 적용 가능한 시행세칙에 따라 상환된다.

33. 당사자의 법률비용 및 기타 비용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에서 당사자의 법률비용 및 기타 비용을 다른 당사자에게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34. 면책

34.1 SIAC의 중재법원장, 중재법원의 상임위원, 이사 및 임직원 또는 중재인을 포함한 SIAC는 누구에게도 이 규칙에 따라 진행된 중재와 관련된 과실,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4.2 SIAC의 중재법원장, 중재법원의 상임위원, 이사 및 임직원 또는 중재인을 포함한 SIAC는 이 규칙에 따라 진행된 중재와 관련하여 어떠한 진술을 할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이 규칙에 따른 중재와 관련하여 SIAC의 중재법원장, 중재법원의 상임위원, 이사 및 임직원 또는 중재인을 어떠한 법적 절차에서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

35. 비밀유지

35.1 당사자들과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항 및 중재판정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35.2 당사자들 모두가 사전에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나 중재인은 제3자에게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항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 a. 관할 법원에 중재판정의 집행 또는 불복을 위한 신청을 하려는 경우
- b. 관할 법원의 명령이나 소환장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 c. 법률상 권리를 주장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경우
- d. 공개를 하는 당사자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 e. 감독기관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의 요청 또는 요구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
- f. 당사자 일방이 신청하고 다른 당사자들에게 적절히 통지가 된 경우에 중재판정부의 명령에 따른 경우

35.3 본조에서 “중재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항(matters relating to the proceedings)” 이라 함은 중재절차의 존재, 중재절차와 관련된 변론, 증거 및 기타 자료들, 다른 당사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들 및 절차와 관련된 중재판정을 포함하되, 공공의 영역에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35.4 당사자가 본조를 위반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징계 또는 비용 부담을 명령하거나 판정을 내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36. 중재법원장, 중재법원 및 사무국의 결정

- 36.1 제25.1조의 경우는 별도로 하고, 중재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한 중재법원장, 중재법원 및 사무국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당사자들과 중재판정부를 구속한다. 중재법원장, 중재법원 및 사무국은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그 이유를 설시할 필요가 없다.
- 36.2 제25.1조의 경우는 별도로 하고, 당사자들은 중재법원장, 중재법원 및 사무국의 어느 결정에 대하여도 어느 나라의 법원이거나 기타 사법당국에 대한 항소 기타 어떠한 형태의 불복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37. 일반 조항

- 37.1 당사자 일방이 이 규칙의 조항 또는 의무가 준수되지 않았음을 알았으나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중재절차를 계속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37.2 중재법원장, 중재법원 및 사무국과 중재판정부는 이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 규칙의 정신에 입각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공정, 신속, 경제적인 중재절차의 종료와 집행 가능한 중재판정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 37.3 사무국은 이 규칙에 적용을 받는 중재의 관리를 위하여 이 규칙을 보충, 규제 또는 시행하기 위한 시행세칙(Practice Notes)를 규정할 수 있다.

별지 1

긴급중재인

1. 긴급처분이 필요한 당사자는 중재신청서의 제출과 동시에 혹은 그 이후, 중재판정부 구성 이전에 긴급한 임시적 처분을 신청 (이하 본 별지에서 “신청” 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 당사자는 사무국과 다른 모든 당사자들에게 신청하는 처분의 성질과 그러한 처분이 긴급하게 필요한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에는 당사자가 그 처분에 대한 권리가 있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지는 다른 모든 당사자들이 그 통지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진술 또는 다른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점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과 함께 이 별지 1에 따른 절차를 위하여 사무국이 정한 비용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중재법원장은 SIAC가 이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무국이 동 신청을 접수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 영업일 이내에 긴급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긴급중재인 후보자는 선정을 수락하기 전에 자신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하여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사무국에 고지하여야 한다. 긴급중재인 선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사무국이 긴급중재인 선정 사실 및 고지 받은 사정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알린 날로부터 1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4.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긴급중재인은 당해 분쟁과 관련하여 이후의 중재절차에서 중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5. 긴급중재인은 가능한 신속히,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선정된 때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긴급처분 신청에 대한 심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계획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진술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공식 심리를 대신하여 진화 회의, 서면 제출 등을 통한 대체적 절차로 진행할 수도 있다. 긴급중재인은 관할권 결정을 포함한 이 규칙에 따른 중재판정부로서의 권한을 가지며, 이 별지 1에 따른 신청과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 결정한다.

6. 긴급중재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임시적 처분을 명령하거나 판정할 권한이 있다. 긴급중재인은 자신의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긴급중재인은 임시적 처분 또는 명령을 정정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
7. 긴급중재인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권한이 없다. 중재판정부는 긴급중재인이 내린 임시판정 또는 긴급처분의 명령을 재심사, 정정 또는 무효로 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긴급중재인이 제시한 이유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긴급중재인이 내린 명령 또는 판정은 선고 후 90일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거나, 중재판정부가 최종판정을 하거나 신청이 철회되면 구속력을 잃는다.
8. 긴급처분에 관한 어떠한 임시판정 또는 명령에는 신청 당사자가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다.
9. 이 별지 1에 따른 명령이나 판정은 내려짐과 동시에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이 규칙에 따른 중재에 합의함으로써, 당사자들은 이러한 명령 또는 판정에 지체 없이 따를 의무를 가진다.
10. 이 별지 1에 따른 신청과 관련된 비용의 배분은 우선 긴급중재인에 의하여 결정되고, 중재판정부가 최종적인 비용의 배분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11. 이 규칙은 별지 1에 따른 모든 절차에 적용되고, 적용에 있어서 이러한 절차와 관련된 고유의 긴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긴급중재인은 이 규칙이 어떠한 방식으로 적절히 적용될 지 결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결정은 최종적이며 불복할 수 없다.

별지 2

싱가폴 국제중재센터의 국내 중재규칙 특별 조항

제1조 폐지

2002년 9월 1일자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의 제2차 국내 중재규칙은 폐지한다.

제2조 경과 규정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의 국내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이 규칙과 본 별지에 따른 중재의 합의로 간주된다.

제3조 요약판정

1. 이 규칙의 제17조에 따른 중재신청서, 답변이유서 및 반대신청서의 제출기한이 만료된 때로부터 21일 이내에, 당사자가 자신의 신청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에 대한 유효한 답변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 신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요약판정을 신청하고, 다른 당사자와 사무국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본조에서 “신청”은 반대신청을 포함한다.
2. 요약판정의 신청은 그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전부 및 상세한 주장을 설명하는 선서진술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3. 상대 당사자가 이러한 신청을 반대하는 경우, 요약판정 신청서와 선서진술서가 송달된 때로부터 21일 이내에 반대 사실을 설명하는 선서진술서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요약판정을 신청한 자는 이를 반대하는 진술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 선서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의 허가 없이 추가적인 선서진술서는 제출될 수 없다.

4. 중재판정부는 신청서를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
 - a. 요약판정
 - b. 요약판정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 c. 요약판정 신청인의 신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하는 결정
5. 사무국이 기한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심리가 종료한 때로부터 21일 이내에 서면으로 판정 혹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6. 중재판정부가 재량에 따라 이 규칙 제31조, 제32조 및 33조에 언급된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정할 수 있다.
7. 본조에 따라 내려진 요약판정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이 규칙 제 28.2조, 제29.1조 및 제29.2조가 준용된다.
8. 신청이 기각되면,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결제정보

1. 현지 수표로 결제할 경우 싱가포르 국제 중재 센터로 지불가능하다. 모든 수표는 아래 주소로 직접 보내야 한다.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32 Maxwell Road, #02-01
 Singapore 069115
 Attn: Accounts Department

2. 은행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도 결제 가능하다. (**은행 수수료를 포함하여 지불 요**)

수령인 :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은행 : United Overseas Bank Limited
 은행 지점 : Coleman Branch
 은행 주소 : 1 Coleman Street, #01-14 & B1-19,
 The Adelphi, Singapore 179803
 은행 계좌 : 302-313-540-8
 Swift code : UOVBSGSG

송금 식별의 편의를 위해, 당사자들은 송금 세부 사항(당사자 성명/사건 번호)등을 포함하여 송금하여야 한다. 예납금의 용이한 추적을 위해, 당사자들은 예납금을 송금한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송금 기록의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각 당사자들은 송금업무를 진행하기 전, 싱가포르 국제 중재 센터로 최근 은행 계좌 정보를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싱가포르 달러 이외의 통화로 지불할 경우, 싱가포르 국제 중재 센터로의 사전 확인이 바람직하다.

싱가포르 국제중재법(CAP 143A)

싱가포르 국제중재법(CAP 143A)은 www.siac.org.sg 혹은 <http://statutes.agc.gov.sg> 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싱가포르 국제중재원 표준중재조항

(2015년 9월 1일 수정판)

국제 계약서 작성시 권고되는 표준중재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의 존재, 효력 또는 해지 여부 등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여,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현재 시행중인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규칙("SIAC 규칙")에 따라,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가 진행하는 중재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 규칙은 이 표준중재조항의 일부로 본다.

중재지는 [싱가포르]로 한다.*

중재인은 _____ (인)으로 한다.**

중재에 사용될 언어는 _____ (어)로 한다.

준거법

준거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계약은 _____ 법이 적용된다.***

* 당사자들의 선택에 따라 중재지를 적시 합니다. 만일 당사자들이 싱가포르가 아닌 다른 중재지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싱가포르 대신 선택하고자 하는 도시와 국가 명을 기입합니다. 예: [서울, 대한민국].

** 홀수 즉, 1인 혹은 3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국가명이나 관할명을 기재합니다.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 MODEL CLAUSE

(Revised as of 1 September 2015)

In drawing up international contracts, we recommend that parties include the following arbitration clause: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including any question regarding its existence, validity or termination, shall be referred to and finally resolved by arbitration administered by the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 Rules") for the time being in force, which rules are deemed to be incorporated by reference in this clause.

The seat of the arbitration shall be [Singapore].*

The Tribunal shall consist of _____ ** arbitrator(s).

The language of the arbitration shall be _____.

APPLICABLE LAW

Parties should also include an applicable law clause. The following is recommended:

This contract is governed by the laws of _____.***

* Parties should specify the seat of arbitration of their choice. If the parties wish to select an alternative seat to Singapore, please replace "[Singapore]" with the city and country of choice (e.g., "[City, Country]").

** State an odd number. Either state one, or state three.

*** State the country or jurisdiction.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싱가포르 국제중재원 신속절차 표준중재조항

(2015년 9월 1일 수정판)

국제 계약서 작성시 권고되는 표준중재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의 존재, 효력 또는 해지 여부 등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여,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현재 시행중인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규칙("SIAC 규칙")에 따라,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가 진행하는 중재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 규칙은 이 표준중재조항의 일부로 본다.

당사자들은 이 조항에 따라 개시된 모든 중재는 SIAC규칙 제5.2조에 규정된 신속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합의한다.

중재지는 [싱가포르]로 한다.*

중재판정부는 단독중재인으로 한다.

중재에 사용될 언어는 _____ (어)로 한다.

준거법

준거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계약은 _____ 법이 적용된다.**

* 당사자들의 선택에 따라 중재지를 적시 합니다. 만일 당사자들이 [싱가포르]가 아닌 다른 중재지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싱가포르 대신 선택하고자 하는 도시와 국가 명을 기입합니다. 예: [서울, 대한민국].

** 국가명이나 관할명을 기재합니다.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EXPEDITED PROCEDURE MODEL CLAUSE

(Revised as of 1 September 2015)

In drawing up international contracts, we recommend that parties include the following arbitration clause: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including any question regarding its existence, validity or termination, shall be referred to and finally resolved by arbitration administered by the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 Rules") for the time being in force, which rules are deemed to be incorporated by reference in this clause.

The parties agree that any arbitration commenced pursuant to this clause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Expedited Procedure set out in Rule 5.2 of the SIAC Rules.

The seat of the arbitration shall be [Singapore].*

The Tribunal shall consist of one arbitrator.

The language of the arbitration shall be _____.

APPLICABLE LAW

Parties should also include an applicable law clause. The following is recommended:

This contract is governed by the laws of _____.**

* Parties should specify the seat of arbitration of their choice. If the parties wish to select an alternative seat to Singapore, please replace "[Singapore]" with the city and country of choice (e.g., "[City, Country]").

** State the country or jurisdiction.

SIAC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 모바일 앱



SIAC는 iPhone, iPad와 Blackberry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앱을 통해 SIAC 2013년 규칙과 싱가포르 국제중재법(IAA)를 제공하고 있다.

SIAC 모바일 앱은 또한 SIAC중재 과정에 따른 대략적인 비용의 산출과 중재인 명단을 제공하고 있다.

SIAC 모바일 앱은 현재 App store과 Blackberry App World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32 Maxwell Road #02-01 Singapore 069115
T: (65) 6221 8833 F: (65) 6224 1882 W: www.siac.org.sg

비용에 관한 별지규정

(이하 모든 화폐단위는 싱가포르 달러를 의미한다)

이하 비용에 관한 별지규정은 2014 년 8 월 1 일부터 효력이 있고, 2014 년 8 월 1 일이후에 개시된 모든 중 재사건에 적용된다.

신청비용* (반환 불가)

싱가포르 신청자	S\$2,140**
해외 신청자	S\$2,000

* 신청비용은 SIAC 에 의해 관리되는 모든 사건에 적용되며 신청과 반대신청에 각각 적용된다.

** 7%의 GST 를 포함한다.

관리비용

관리비용은 SIAC 의 규칙에 따르는 모든 중재와 SIAC 에 의해 관리되는 중재에 적용되고 이는 SIAC 에 지불 하여야할 최대비용을 말한다.

분쟁가액 (\$\$)	관리비용 (\$\$)
50,000 이하	3,800
50,001 부터 100,000	3,800 + (신청금액-50,000)*2.200%
100,001 부터 500,000	4,900 + (신청금액-100,000)*1.200%
500,001 부터 1,000,000	9,700 + (신청금액-500,000)*1.000%
1,000,001 부터 2,000,000	14,700 + (신청금액-1,000,000)*0.650%
2,000,001 부터 5,000,000	21,200 + (신청금액-2,000,000)*0.320%
5,000,001 부터 10,000,000	30,800 + (신청금액-5,000,000)*0.160%
10,000,001 부터 50,000,000	38,800 + (신청금액-10,000,000)*0.095%
50,000,001 부터 80,000,000	76,800 + (신청금액-50,000,000)*0.040%
80,000,001 부터 100,000,000	88,800 + (신청금액-80,000,000)*0.031%
100,000,000 초과	95,000

아래에 열거된 사항은 관리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 중재 판정부의 수당 및 경비
- 시설사용 및 서비스에 수반되는 비용과 심리와 관련된 모든 비용 (심리장소와 그 시설, 속기사와 통역 서 비스등);
- SIAC 가 지출한 모든 경비.

중재인 수당

SIAC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중재사건에 있어서는, 규칙 제 30 조 1 항에 따라 당사자들이 중재인 수당에 대하여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표에 따른다.

아래 표에 따라 계산될 중재인 수당은 일인 중재인에게 지급될 최대금액을 의미한다.

분쟁가액 (S\$)	중재인 수당 (S\$)
50,000 이하	6,250
50,001 부터 100,000	6,250 + (신청금액-50,000)*13.800%
100,001 부터 500,000	13,150 + (신청금액-100,000)*6.500%
500,001 부터 1,000,000	39,150 + (신청금액-500,000)*4.850%
1,000,001 부터 2,000,000	63,400 + (신청금액-1,000,000)*2.750%
2,000,001 부터 5,000,000	90,900 + (신청금액-2,000,000)*1.200%
5,000,001 부터 10,000,000	126,900 + (신청금액-5,000,000)*0.700%
10,000,001 부터 50,000,000	161,900 + (신청금액-10,000,000)*0.300%
50,000,001 부터 80,000,000	281,900 + (신청금액-50,000,000)*0.160%
80,000,001 부터 100,000,000	329,900 + (신청금액-80,000,000)*0.075%
100,000,001부터 500,000,000	344,900 + (신청금액-100,000,000)*0.065%
500,000,000 초과	605,000 + (신청금액-500,000,000)*0.040% 최대 2,000,000 싱가포르달러 초과 불가

긴급 임시 처분비용

긴급 임시 처분비용은 규칙 26.2 와 별지 1 에 규정된 SIAC 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1. **긴급 중재인 신청에 따른 비용:** 규칙 26.2 와 별지 1 의 규정에 따른 신청은 아래 비용을 수반하여야 한다.

싱가포르 신청자	S\$5,350*
해외 신청자	S\$5,000

* 7%의 GST 포함.

2. **긴급 중재인 비용:** 긴급 중재인의 비용은 중재 개시 당시 유효한 비용에 관한 별지규정에 따라 계산된 일인 중재인에게 지급될 최대 비용의 20%를 넘을 수 없다. 그러나 사무총장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긴급 중재인 비용의 최소금액은 싱가포르 달러 20,000 이다. 신청인은 긴급 중재 신청 후, 긴급 중재인 수당과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예납금을 예치해야 한다.

www.siac.org.sg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32 Maxwell Road #02-01 Singapore 069115

t +65 6221 8833 | **f** +65 6224 1882 | **e** corpcomms@siac.org.sg